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완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자치법규 233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하였다.

* (개선성과)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이다.

*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위 관련 평가지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임

《 주요 개선사례 》

- (진입제한 규제)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관광진흥,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시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수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자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자차별 규제)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요건은 사업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개선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시장에서 상품의 품질, 가격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쟁능력제한 규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또는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있어 관련 조례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권익저해 규제)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①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②신청 취소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그간 많은 지자체가 특히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 등을 규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저해해 왔던 조례를 개선한 것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026년에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200-4351)
		담당자	팀 장	공 현 (044-200-4341)
			사무관	황인성 (044-200-4343)



□ (진입제한) 자치법규가 인·허가, 등록, 지정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

< 주요 개선내용 >

<p>■ 도매시장 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p> <p>■ (00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u>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의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설정</u></p> <p>⇒ 사업자 수요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u>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의 규모를 10억원 이상으로 완화</u></p> <p>■ (기대효과) 자본금 요건 완화로 사업자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진입 여건 개선</p>
<p>■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완화</p> <p>■ (00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조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u>최소 보유 자동차 수는 20대 이상</u></p> <p>⇒ 사업자 수요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u>최소 보유 자동차 수를 10대 이상으로 완화</u></p> <p>■ (기대효과) 등록 기준 완화로 사업자의 해당 지역 자동차대여사업 진입 여건 개선</p>
<p>■ 지자체 사무 수탁자 선정에 공개경쟁 원칙 명시</p> <p>■ (00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장은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p> <p>⇒ 시장은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u>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u></p> <p>■ (기대효과) 지자체 사무 수탁자 선정시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진입 여건 개선</p>

□ (사업자차별) 자치법규가 특정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지역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 주요 개선내용 >

<p>■ 관광기념품 인정 범위 확대</p> <p>■ (00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관광기념품"이란 <u>00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하여야 함</u></p> <p>⇒ "관광기념품"이란 <u>00시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u> 개발 및 제작하도록 개선</p> <p>■ (기대효과) 사업자의 능력과 관련 없는 지역 소재 요건 완화로 제품 품질, 가격, 서비스 기반의 경쟁 기대</p>
--

- (경쟁능력제한) 자치법규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가격결정, 영업 방침,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

< 주요 개선내용 >

▣ 지역 건설(석재)산업 경쟁여건 개선

- (00시.군 건설(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역 건설(석재)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

⇒ 지역 건설(석재)산업체는 **건전한(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경쟁 자제 문구 삭제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간섭 완화 및 조례에 근거한 담합 우려 해소

- (소비자권익저해) 자치법규가 사용료 및 위약금 규정을 비대칭적으로 규정(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 주요 개선내용 >

▣ 사용료 반환 체계 개선

- (00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수강료의 반환**과 관련한 내용 **미규정**

⇒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신설**

- (00군 00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용자 귀책사유(이용 취소)의 경우에 대해서만 반환 절차, 방법 등 규정**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 (기대효과)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명확화로 이용자와 지자체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